

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7년 3월 6일

나. 회부일자 : 1997년 3월 6일

3. 제안이유

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업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사업지구 및 면적은 증평읍 초중리 일부지역으로서 사업시행 면적은 459,000m²를 대상으로 하되 면적 증감이 있을 시는 그 면적으로 함.
(안 제3조)
-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대금, 보조금,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함(안 제5조)
-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3년이내로 함(안 제6조)
- 사업시행을 위한 회계는 증평출장소 일반회계로 하고 특정재원으로 함
(안 제7조)

- 체비지, 보류지 및 공공용지 부담방법은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, 부담방법은 공통부담과 연도부담으로 함(안 제10조)
- 출장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지조성 사업비를 체비지등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업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.
(안 제32조)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을 검토한 바
이는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
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사업의 목적 및 명칭, 시행지구 및 면적, 사업의 범위, 비용부담에 관한
사항, 사업의 기간, 회계에 관한사항, 공고의 방법, 토지 및 지장물의 가격
평정 방법에 관한사항,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, 청산금
처리에 관한 사항 등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문화하여
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

본 시행조례안은 계획적인 주거단지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신시가지
조성을 통한 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
사료됨.

첨 부

-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(안)